

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)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대상

- ◆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- 단축 후 근로시간은 **주당 15~35시간**이 되도록 해야 함
- 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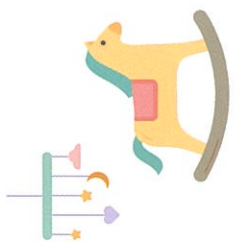
지원내용

- ◆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

주 5시간	통상임금의 100%(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)
나머지 단축분	통상임금의 80%(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)

신청기간

- ◆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(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)



사업주를 위한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

육아휴직 지원금

지원대상

- ◆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자

지원내용

- ◆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
- * (특례)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려는 근로자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**월 200만 원** 지원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

지원대상

- ◆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자

지원내용

- ◆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
- *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용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**월 10만 원 추가** 지원

대체인력 지원금

지원대상

- ◆ 근로자에게 출산(유·사산)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자

지원내용

- ◆ 대체인력 채용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지원
- *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까지 지원(최대 2개월)

일하는 엄마·아빠를 위한 출산·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

- ✓ 출산전후휴가급여
- ✓ 배우자 출산휴가급여
- ✓ 육아휴직급여
- ✓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- ✓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



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고용노동부

국번없이 1350